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37호

붙임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 척수 기준)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선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에 따른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 1인 4척 이내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어장 관리 선의 척수 기준

어업의 종류	어업방법	어장관리선의 척수
해조류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협 또는 어촌계, 개인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함) 단, 미역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및 김 100척 이상 200척 미만 2척 이내, 미역 200대 이상 300대 미만 및 김 200척 이상 300척 미만 3척 이내, 미역 300대 이상 김 300척 이상 4척 이내 지정</li> </ul>
패류양식	수 하 식 바 닥 식 가두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하식, 가두리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5ha 이상 입어·행사자는 1인 2척 이내 지정</li> <li>•수하식, 가두리식 양식어업 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다만, 5ha 이상 소유자(지분권자 포함)는 1인 2척 이내 지정</li> <li>•바닥식 양식어업은 어장면적 10ha 미만 1척, 10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li> <li>•바닥식 양식어업 중 개인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을 같이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어장면적 10ha 이상인 경우는 1인 2척 이내</li> </ul>
어류등양식	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ha 미만 1척, 1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li> <li>•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 중 행사면적이 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 지정(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인 경우도 2척 이내 지정). 단, 축제식 양식어업은 1건당 1척 지정</li> </ul>
복합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 합 양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하식, 혼합양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라도 1척에 한하여 지정)</li> <li>•수하식, 혼합양식 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li> <li>•바닥식 양식어업은 어장면적 10ha 미만 1척, 10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li> </ul>
협동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 류 양 식 복 합 양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의 척수기준과 동일(단,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도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 기준을 적용)</li> </ul>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소형정치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3척 이내</li> <li>•소형정치망 1건당 2척 이내</li> </ul>
마을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계별 마을어업 면허된 면적의 합계가 10ha 미만 1척, 10ha 이상 100ha 미만 2척 이내, 100ha 이상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li> </ul>